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에 “다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별표1의2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제15조 제2호 “산림 분야 대학”을 “대학”으로 한다.

제19조의2 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지정자격란 나목 중 “산림교육을 위해”를 “산림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 되는 양성기관의 경우 2의다.에서 1년을 2년으로 완화한다. 단, 이는 해당 규정 개정 후 최초 위반 건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 기본시설란 가목 중 “1㎡ 이상으로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을 “1㎡ 이상일 것”하고, 다목 중 “열람좌석 10석 이상으로 산림 관련 도서를 200권 이상 갖출 것”을 “산림관련 도서를 200권이상 갖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 -----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 ----- ----- -----
<u>< 신 설 ></u>	-----, <u>다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다.</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 ----- -----.

1. (생략)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u>산림 분야 대학</u> 3.~ 5. (생략)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제15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2017년 1월 1일</u> 5. (생략)	1.(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u>대학</u> 3.~ 5.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1.~ 3. (현행과 같음) 4. <u>< 삭제 ></u> 5. (현행과 같음)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9조제1항 관련)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산림 분야 대학(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유아교육 분야 대학(유아숲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산림교육 전문과정의 구성
 - 가. 산림교육 전문과정은 공통과정과 분야별과정(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으로 구성한다.
 - 나.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종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려는 경우에는 공통과정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 다. 공통과정
 - 1) 공통과정의 교육시간은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2) 공통과정의 내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7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7조제2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 취소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	시정명령	지정 취소	

라.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 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한 경우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 · 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 방해한 경우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제1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 취소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제1항제4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 취소

3.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되는 양성기관의 경우 2의다.에서 1년을 2년으로 완화한다. 단, 이는 해당 규정 개정 후 최초 위반 건부터 적용한다.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요소	지정기준
1. 일반기준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산림(공원을 포함한다)을 10만㎡ 이상 소유 또는 임대할 것
2. 기본시설	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명당 <u>1㎡ 이상일 것</u> 나. 실내실습장은 교육인원 1명당 1.2㎡ 이상, 총전용면적 200㎡ 이상일 것. 다만, 2개소 이상의 실내실습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하여 총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도서실은 <u>산림관련 도서를 200권이상 갖출 것</u> 라. 관리실 및 사무실, 안내시설은 사무 및 시설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할 것. 이 경우 관리실 등은 겸용할 수 있다. 마. 화장실, 급수·소방 시설, 채광·환기 시설,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방음장치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갖출 것
3. 지원시설	필요한 경우 세미나실, 자료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양호실, 그 밖에 여가 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4. 전문인력	가. 산림교육센터에는 상근 관리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나.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상근하고,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5. 프로그램	가. 학교교원에 대한 산림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확보할 것 나. 산림교육을 위한 연중 교육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